

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체계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

2026. 7. 21.

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(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, 조달청 관련지침 등)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☐ 용역명 :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체계 컨설팅 용역
- ☐ 용역내용 : '제안요청서' 참조
- ☐ 사업예산 : 50,000,000원(VAT 포함)
- ☐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간
- ☐ 사전규격공개 : '26.7.15.(수)~ '26.7.20.(월)
- ☐ 입찰공고 : '26.7.21.(화)~ '26.8.3.(월) 10시까지
- ☐ 제안서 평가* :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

* 제안서 설명회(PT)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

2. 입찰 및 계약방법

- ☐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의한계약)
- ☐ 낙찰자 결정방법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에 의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
- ☐ 용역 주요내용
 - 서민금융진흥원 계정별 자산운용체계 진단 및 개선안 도출
 - 서민금융진흥원 계정별 적정 투자자산군 도출
 -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, 벤치마크 지수 재정립
 - 서민금융진흥원 자산배분 모델 도출
 -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제시

3. 입찰참가자격

-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)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(대표자 포함)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“조세포탈 등을 한 자”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
 -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-1169)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1)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
 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
 - 3) 「고등교육법」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
 - 4)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·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
 - 5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58조 및 동법 시행령 280조의 요건을 갖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된 법인
 - 본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
 - ※ 정책·공공기관의 자산운용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요구
 -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

4.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

☐ 제출기한 : '26.8.3.(월) 10시까지

☐ 제출방법

○ 가격입찰서 : 조달청 나라장터 e-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

○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: 우편(방문) 접수*(전자제출 하지 않음)

* 대표자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) 방문

※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,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

※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※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
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허정희 과장
(문의 02-2128-8033, yao5350@kinfa.or.kr)

※ 접수시간 : 09:00~18:00 (점심 12:00~13:00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)

☐ 제출서류 목록

순번	제출서류
1	· 제출 공문서 1부(각 제안사 양식)
2	· 입찰참가 신청서 1부(나라장터 전자입찰로 대체)
3	·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- 가격제안서,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
4	·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(자유양식) 각 10부 (흑백 출력 必, 요약제안서는 15분 발표, 10분 질의 및 응답 분량으로 제작)
5	· 제안서 파일 -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를 USB에 담아 제출
6	·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의 경우, 사용인감계 포함) 각 1부 (최근 3개월 이내 발행)
7	·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- 전자제출 혹은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
8	·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1부
9	·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 -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
10	· 신용평가등급확인서
11	· 제안 요청서 내 별지서식 일체
12	·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13	·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(대리인 방문 접수 시)

☐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

-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입찰자는 현장여건,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서금원은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·점검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·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·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☐ 입찰보증금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,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

* 보증서 및 증권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

☐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, 입찰보증금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6.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

☐ '제안요청서' 참조

7. 낙찰자 결정방법

☐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

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(기재부 계약예규)에 의하여,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

- 평가비율 : 기술평가(80%), 가격평가(20%)
 - ※ 용역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, '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'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10점 가산
-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
-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%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(기술능력+입찰가격)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 - ※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-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,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함
 - ※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
 - ※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
-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(용역내용, 이행방법 등)을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
-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,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 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
-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,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

8. 입찰의 무효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「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
-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(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 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
- 시행규칙 제44조 및 「용역입찰유의서」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)를 요청하는 경우,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9.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
- ☐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,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

10. 유의사항

- ☐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함
- 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“청렴계약 이행각서”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제안서 제출시 “청렴계약 이행각서”를 제출하여야 함
- ☐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☐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☐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
- ☐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, 제안요청서,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)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☐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
- ☐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,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 인정되지 않음
- ☐ 배포된 입찰공고문,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,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

-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
- ※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
-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

★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·향응·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·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,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(감사실)이나 홈페이지 ‘클린신고센터’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※ 부패행위신고 :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(홈페이지 접속 → 소통참여→신고합니다→클린신고센터→신고하기)를 통한 신고

※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

(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☎ 02-2128-8211)
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(제안 관련 : 허정희 과장 02-2128-8033, 입찰 관련 : 이용우 대리 02-2128-8048) 문의

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1일

서민금융진흥원장